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0. 1. 28.] [국토교통부훈령 제1274호, 2020. 1.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044 - 201 - 32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에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협동연구책임자"란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7.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공동연구책임자"란 공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9.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위탁연구책임자"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1. "대형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2. "중형과제"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3. "세부과제"란 하나의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과제를 말한다.
14. "계속과제"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5. "참여기업"이란 제20호의 실시를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6. "사업단"이란 대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17.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8. "연구단"이란 중형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19. "연구단장"이란 연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20. "실시"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1. "기술료"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2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5. "분리공모"란 하나의 과제 내에서 주관연구기관과 별도로 연구수행기관을 공모 및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6.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은 영리기업으로 간주한다.
27.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8.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29.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사업의 범위)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2. 플랜트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3. 자동차,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4. 물류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5. 국토교통공간 활용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6. 국토교통환경과 안전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7. 국토교통자원과 에너지활용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8. 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연구
9.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운영과 인력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10.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지원
11.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및 관련 활동

제2장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제4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등)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건설정책국장, 도로국장, 철도국장,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과학기술위원회는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기술정책·경제 및 융·복합기술 전문위원회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정책 및 추진전략, 국토교통분야 융·복합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국토기술 전문위원회 : 국토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통기술 전문위원회 : 교통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인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련업무 담당 과장 1명을 간사로 둔다.

③ 전문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거나 전문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를 따른다.

제6조(총괄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각 실·국의 과장이나 팀장 중에서 업무연관도가 높은 자를 기술분야별 총괄담당관(이하 "총괄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담당관은 소관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기술분야별 정책 총괄
2.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원
3. 기획연구 선정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소관 분야 관련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괄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담당관 등) ① 총괄담당관은 소관 분야 연구개발사업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5급 상당의 공무원(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단위의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사업담당관은 과제별 담당 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기관 현장점검, 중간·단계·최종평가 참여 등 사업 및 과제관리
2. 총괄담당관의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3. 유관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획사업담당관) ① 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기획연구선정위원회에서 대형사업을 사전기획하거나 기획연구하기로 결정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담당자(이하 "기획사업담당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 중요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형과제에 대해서도 기획사업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획사업담당관은 해당 기획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획위원회 구성, 운영
2.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3. 총괄담당관의 제6조제2항제4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4. 기획연구 추진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유관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
6. 그 밖에 기획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획사업담당관은 제15조에 따른 기획전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통해 영 제13조의 업무를 위탁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기술분야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시설과 행정의 우선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과 사용실적 보고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활용결과 보고
5. 지식재산권 출원과 기술이전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6.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관리와 결과 보고
7. 협동연구기관과 협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과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과 변경 요청
8. 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와 결과보고
9. 보안 관리
10.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참여연구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
 7. 연구개발 성과(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성과를 포함한다)의 보고
 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질병·퇴직, 그 밖의 사유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협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기관과 위탁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구성·운영과 사업단장의 권한·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단 운영 부실
 2. 연구개발성과 불량
 3.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등

제13조(연구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8호에 따른 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단의 연구단장 해임 및 연구단 해체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3항을 따른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의 구성·운영과 연구단장의 권한·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기획연구 등의 추진

- 제14조**(기획연구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및 정부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장관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사업 또는 중형과제(이하 "사업 또는 과제"라 한다)를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기획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5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획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장관은 기획연구 시행에 앞서 기술동향 등 분석을 통해 기획연구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기획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장관은 제1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안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재난·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 ⑤ 장관은 기획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수행중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재기획 등을 통하여 연구내용이나 추진방법·체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공동관리규정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8. 실용화 및 기술료 납부 대상과제 여부
- ⑦ 개발연구(실용화) 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연구인 경우 지식(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신청 및 지정 등 기술인증 획득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 성과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15조**(기획전담기관) ① 장관은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을 전담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획전담기관"이라 한다)을 공동관리규정 제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획전담기관은 영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수요조사 등 사업 또는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2. 기획연구선정위원회 등 기획연구 선정 지원
3. 기획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획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획연구서의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기획연구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등
6. 정산, 관리 등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
7. 기타 기획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장관이 위탁한 사항

③ 장관은 제2항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규정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기획연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자금계정을 마련하고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기획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으로서 영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기획연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사업 또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내부 기술수요조사는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이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외부 기술수요조사는 기획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진행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수요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또는 기획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검토) ①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의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사전검토표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별도의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사업 또는 과제를 통합, 분리하거나 명칭, 연구내용 및 예산규모 등에 대한 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정리하여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괄담당관은 정책방향, 정부예산 지원 필요성, 연구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또는 과제를 통합, 분리하거나 명칭, 연구내용 및 연구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총괄담당관은 그 결과를 정리하여 기획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위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기획연구선정위원회) ①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출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획연구 수요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전기획 또는 기획연구(이하 "기획연구등"이라 한다) 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기획연구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기획연구등의 추진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 기관이 경쟁의 방식으로 기획연구등을 추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연구선정위원회는 정책기획관 주재로 연2회 이상 개최하고 기획전담기관 부원장, 민간전문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획연구등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기획연구등 선정의 특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장관회의 등 상급위원회 심의나 장관 방침 등으로 추진 타당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은 경우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과 협의하여 제16조와 제17조의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우선 기획연구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의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는 사후보고로 대체한다.

제20조(기획연구등의 수행) ① 기획사업담당관은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대형사업의 사전기획을 추진한 결과 기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에게 기획연구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대형사업의 기획연구등을 하기로 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획사업담당관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기술개발 목표 수립 등 기획연구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활용가능성, 정부정책 부합성,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연구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기획사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중형과제의 기획연구등을 하기로 한 경우 총괄담당관 또는 기획사업담당관은 연구과제의 필요성, 성공가능성, 타당성(필요시) 등을 검토하여 기획연구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총괄담당관 또는 기획사업담당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기획사업담당관, 총괄담당관 및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기획연구등의 지속적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연구등을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 수행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해지에 따라 회수된 기획연구비는 다른 기획연구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사업담당관이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에게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요를 제출받은 경우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방법 등은 「투자심사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2조(예산편성) ① 총괄담당관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에게 차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은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예산규모, 연구기간 및 명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영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영 제1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공고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목적, 실용화과제 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4. 장관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때에는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2.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고할 경우 우수연구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리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과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기획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보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8. 연구개발비 명세서
9.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10.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지원제외조건 해당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 보완 및 반려 기준의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연구과제 평가단)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연구과제 평가단의 위원장은 출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하되 필요시 호선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 계획서에 대하여 규칙 제4조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기관을 선정 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40조제1항의 자격기준 외에 연구과제 평가단의 자격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3.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4.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5. 제25조제2항제9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6.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7.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8.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9.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용화 과제의 경우 실용화 성공 가능성)
10.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12.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우수한 연구 개발성으로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을 받은 자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10.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11.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12. 그 밖에 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이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과제지원 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 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기관에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 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⑧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제외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⑩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⑪ 제7항에 따른 종합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 평균한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시 평가결과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⑫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은 제11항에 따른 종합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부여하되 60점 미만(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과제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⑬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관 또는 신청인을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11항에 따른 종합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2. 제12항에 따른 감점이 부여된 최종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3. 대면(발표)평가 및 현장평가에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⑭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영 제8조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 의견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보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9조(협약의 체결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공동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이하 "전자협약"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협약에 따른 관련서류 등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협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기협약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

1의2.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실용화 과제는 최종연차 협약시 성과물 활용 및 기술 실용화 등 성과활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연구보고서·연구개발성과·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공동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동관리규정 제29조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동·공동 또는 위탁연구협약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공동·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협동·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시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장과 함께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맺고 그 참여계약서 및 민간부담금 약정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⑦ 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다년도 협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 협약기간이 회계연도 기준 2년 이상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다년도 협약은 최초로 맺은 협약에서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에 대한 협약을 맺는다.

제31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내용·연구책임자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면 관련협동·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고, 주요 사항의 변경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대내외 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해약내용과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관리

제33조(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도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 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당해 연도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제30조에 따른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종료 45일 전까지 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마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세부과제별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과 결과
3. 목표 달성도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와 활용 계획
5.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6. 국내외 다른 연구개발성과와의 연계가능성 검토 결과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8.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현황
9. 데이터관리계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차(단계)실적·계획서나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속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중간평가(중간모니터링 또는 연차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제30조에 따른 다년도 협약 과제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난 후 단계실적·계획서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단계평가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과제의 최종평가를 할 수 있다.

- ③ 장관이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평가를 아니 할 수 있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영 제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을 병행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신기술 등 관련 기술인증제도 및 인증 동향을 포함한다),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⑧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최종평가·추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6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7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 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성실수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3.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와 요약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나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38조(보안관리심의회) ①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 총괄담당관 또는 사업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며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③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39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제지원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갖추어야 하는 과제지원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6항에서 정하는 정보

2.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제지원시스템을 갖추거나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중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전문가 명부의 구축) ①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말한다.

1.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2. 해당분야의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에 있는 사람

4.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격기준에 따라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 후보단의 명부를 갖추어야 한다.

제7장 제재조치 평가단 및 제재부가금 수납

제41조(제재조치 평가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내용을 알려야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등의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내용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제재부가금 수납기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제재부가금은 전문기관의 장이 수납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5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결과, 제32조에 따른 협약의 해약 및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4조(포상) 장관은 국토교통기술 육성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5조(적용특례) ① 장관은 2개 이상의 정부기관이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한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관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이 규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부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13호, 2018.1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신규로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훈령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훈령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② 제6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담당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유지한다.

③ 제7조에 따른 사업담당관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과제담당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유지한다.

제5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10호, 2015.4.6., 전부개정)을 폐지한다.

부칙 <제1274호, 2020.1.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1.28.>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기준 (제27조제9항 관련)**1.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 과제에 관한 정책적·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전문가

2.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1호가목, 같은 호 나목1)·3)·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0.1.28.>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27조제9항 관련)**1. 가점 부여항목**

-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 나. 최근 3년 이내(제25조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마.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바.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사.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인증 및 확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아.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나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 연구조합이 참여한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자.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차.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카.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이내 가점 부여

2. 감점 부여항목

- 가.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협약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 의 경우에는 연구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사.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10.00>

기술수요조사서

00	제안 과제명	
----	--------	--

□ 기획과제 개요

목표	
필요성	※ 추진 필요성과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기재 ○ - *

□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 기술동향, 시장동향, 정책동향 등을 포함하여 기재 ○ - *
--

□ 주요 연구내용

○ - *

□ 추진 방안

○ - *

□ 추정 기간 및 비용

기획연구 비용 및 기간	000 백만원, 00개월
총 사업비 / 사업기간	00 억원(정부출연금 : 00 억원, 민간 : 00 억원) / ' 00 ~ ' 00

□ 기존의 선행연구(해당시 기재)

연번	선행 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선행과제와의 차별성
1				
2				
3				

□ 제안자 인적사항 등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주소		연락처	010-0000-1234 031-0000-1234
		E-mail	

* 본문은 최대 4페이지로 하고 필요시 참고자료로 4페이지까지 <첨부> 작성 가능

법제처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8.10.00>

사전검토표

사업(과제)명	제안기관	제안자

1. 검토대상 여부

검토 대상	검토 비대상
	☐ 기존연구와 중복 ☐ 제안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추진 필요성 판단 불가 ☐ 중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추진 필요성이 현저히 낮음

2. 검토결과

기획연구 추정 기간 및 비용	종합점수
기 간 : 00개월 연구비 : 00백만원	

※ 기획연구 필요시 기획기간 및 기획연구비 기재, 불필요시 기간 및 연구비 기재할 필요 없음

3. 항목별 세부 검토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해당란에 "0" 표시)			점수	검토의견
		상	중	하		
1. 필요성	1-1. 사업추진 필요성					
	1-2. 정부지원 타당성					
	1-3. 정부정책 부합성					
2. 기술성	2-1. 기술적 타당성					
	2-2. 기술적 진보성					
	2-3. 기술의 차별성					
3. 시장성	1-1. 미래 시장규모					
	1-2. 시장경쟁 가능성					
	1-3. 시장 진입시기 적절성					
	1-4. 국내외 실용화 가능성					
합계(평균 점수, 100점 만점 환산)						

※ 상, 중, 하 세부 검토결과에 따른 점수는 검토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여(필요성, 기술성 및 시장성 각 100점 만점)